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67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6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수진의원 안)	5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2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3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2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수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u><신 설></u>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 <u>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u>	☐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u>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u>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 <u><삭 제></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수진의원안 2025. 9. 25. 발의(의안번호 13267), 이수진의원안 2025. 9. 25. 발의(의안번호 13268)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품을 삭제하고, 대신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²⁾에서 규정),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2)」, 임상엽·정정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 개정안은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여,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월경용품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여성용 위생용품은 평균 15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한 절대필수품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차이를 조세관련 법규에 반영하여 영세율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양성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과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자 2022년 전국조사를 통해 만 13세 이상 5,56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 폐경, 피임, 관련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월경 중인 청소년과 성인의 평균 초경 연령은 각각 12.11세, 13.03세였으며,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의 평균 초경 연령은 14.30세, 폐경 성인의 마지막 월경 연령은 평균 50.13세로 조사되었음.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월경 중인 청소년 (961명)	월경 중인 성인 (2,137명)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 (1,307명)
13~15세	480 (49.9)	-	-
16~18세	481 (50.1)	-	-
19~29세	-	683 (32.0)	1 (0.1)

구 분	월경 중인 청소년 (961명)	월경 중인 성인 (2,137명)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 (1,307명)
30~39세	—	624 (29.2)	5 (0.4)
40~49세	—	705 (33.0)	105 (8.0)
50~59세	—	125 (5.8)	758 (58.0)
60~64세	—	—	438 (33.5)

자료: 질병관리청, 한국 여성의 월경·폐경 관리: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 2023.6.

둘째, 여성용 위생용품의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제상태는 월 가구 소득 200~399만원이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0~599만원 27.7%, 600만원 이상 26.0%, 200만원 미만 12.9% 순으로 조사되었음.

[조사대상자의 월 가수 소득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월경 중인 청소년 (961명)	월경 중인 성인 (2,137명)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 (1,307명)
200만원 미만	—	276 (12.9)	137 (10.5)
200~399만원	—	713 (33.4)	400 (30.6)
400~599만원	—	592 (27.7)	435 (33.3)
600만원 이상	—	556 (26.0)	335 (25.6)

자료: 질병관리청, 한국 여성의 월경·폐경 관리: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 2023.6.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³⁾

둘째, 우리나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개정안과 같이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사하게 여성의 복리후생 증진과 모성권 보호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영유아용품,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 등에서 동일한 영세율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생리대 시장은 독과점 구조로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높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시장구조를 가격 인상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중이라는 측면을 고려

3) 국세청에 따르면, 여성용 위생용품은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확인이 어려움.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